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16도17349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피고인 1 외 7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이우스(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오세욱 외 2인

원 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16. 10. 13. 선고 2015노2262 판결

판 결 선 고 2020. 9. 2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7, 피고인 8 주식회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재수리법'이라고 한다)은 문화재를 원형으로 보존·계승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의 품질향상과 문화재수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제1조). 문화재수리법은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위하여 문화재의 소유자가 문화재수리를 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문화재수리업자에게 수리하도록 하거나 문화재수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한 기술능력, 자본금 및 시설 등의 등록 요건을 갖추어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4조 제1항). 그리고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문화재수리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하거나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고(제10조 제3항, 제12조), 이를 위반할 경우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대여한 자와대여받아 사용한 자를 형사처벌하며[제58조 제3호, 구 문화재수리법(2015. 3. 27. 법률제132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문화재수리법'이라고 한다) 제59조 제2호], 문화재청장은 그 자격의 취소 내지 정지를 명할 수 있고(제47조 제1항 제7호, 제48조), 문화재수리업의 등록 취소 내지 영업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9조 제1항 제9호).

한편, 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12. 16. 대통령령 제25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종합문화재수리업을 등록하기 위하여 '보수기술자 2명과 단청기술자 1명을 포함한 보수・단청 분야 기술자 4명 이상과 대목수 1명, 한식미장공 1명, 번와와공 1명과 화공・드잡이공・한식석공・한식목공 중 3명 이상을 포함한 기능자 6명 이상'을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와 관련한 기술능력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제12조 제1항 제1호, 별표 7).

이러한 문화재수리법령의 입법 목적과 규정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문화재

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가 그 자격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빌려주어 마치 문화재수리입과 관련하여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가 실제로 고용되어 문화재수리기술자격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받아 문화재수리업을 하도록 한 경우에도, 문화재수리법 제58조 제3호, 제10조 제3항, 제12조 내지 구문화재수리법 제59조 제2호, 제10조 제3항, 제12조에서 금지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대여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문화재수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이 적극적으로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도 13062 판결 참조).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들어 피고인 8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와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7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그실질이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관계라기보다는 문화재수리업 등록 요건 중 기술능력을 충족시키기 위한 자격증 대여관계에 불과하다고 보아, 이를 다투는 위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문화재수리법에서 금지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 대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은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삼았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법리오해,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모두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구체적으로 주장하여 적법한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민유숙
	THE C	LII
주 심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	노태악